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3. 17.

담양군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파쇄·소각 등 물리적 가공에 따른 악취 및 침출수 발생 우려가 있는 폐기물 처리업과 달리 별도의 배출 공정 없이 단순 상차 및 운송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지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환경·경관 위해도가 현저히 낮은 수집·운반업을 입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시설 정비(안 별표2제2호)
 - ◆ 환경·경관 위해시설로서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 (기준)(건설)폐기물 처리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

4. 입법예고 기간 : 2026. 3. 17. ~ 3. 22.(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3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9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 중 3) 가)에 “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단,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으로 하고, 같은 란 중 3) 나)에 “고물상(신고대상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을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고물상(신고대상 이상)”으로 한다. 또한, 같은 란 중 3) 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수집·운반업 제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행															
【별표 29】<신설 2019.2.8., 개정 2021.2.19., 2023.4.13., 2024.6.12., 2024.9.20.,2024.11.8.> <u>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u> <u>기준(제20조의4 관련)</u> 2.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 가.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은 다음표와 같다. <table><tr><th>대상시설</th><th>거리제한</th><th>비고</th></tr><tr><td>2)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 239. 통계청]</td><td rowspan="3">가)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 국가유산, 유적지, 정온 시설(공공시설, 학교, 병 원, 사찰) 등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200m이내</td><td rowspan="3"></td></tr><tr><td>3)다음 각호의 시설 가) 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처리업 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은 제외한다. [폐 기물관리법 제25조]</td></tr><tr><td>나) 고물상(신고대상 이상) [폐기물관 리법 제46조] 다) 해체 선별 및 원 료 재생업 [한국 표준산업분류 C3 83. 통계청] 라) 건설폐기물 처리 업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td></tr></table>	대상시설	거리제한	비고	2)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 239. 통계청]	가)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 국가유산, 유적지, 정온 시설(공공시설, 학교, 병 원, 사찰) 등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200m이내		3)다음 각호의 시설 가) 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처리업 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은 제외한다.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나) 고물상(신고대상 이상) [폐기물관 리법 제46조] 다) 해체 선별 및 원 료 재생업 [한국 표준산업분류 C3 83. 통계청] 라) 건설폐기물 처리 업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	【별표 29】<신설 2019.2.8., 개정 2021.2.19., 2023.4.13., 2024.6.12., 2024.9.20.,2024.11.8.> <u>환경·경관 위해시설 개발행위허가</u> <u>기준(제20조의4 관련)</u> 2.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 가. 대상시설 및 거리제한은 다음표와 같다. <table><tr><th>대상시설</th><th>거리제한</th><th>비고</th></tr><tr><td>2)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 239. 통계청]</td><td rowspan="3">가)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 국가유산, 유적지, 정온 시설(공공시설, 학교, 병 원, 사찰) 등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200m이내</td><td rowspan="3"></td></tr><tr><td>3)다음 각호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 기물 처리업(수집· 운반업 제외)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고물 상(신고대상 이상) 다) 해체 선별 및 원 료 재생업 [한국 표준산업분류 C3 83. 통계청]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 물 처리업(수집·운 반업 제외)</td></tr></table>	대상시설	거리제한	비고	2)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 239. 통계청]	가)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 국가유산, 유적지, 정온 시설(공공시설, 학교, 병 원, 사찰) 등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200m이내		3)다음 각호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 기물 처리업(수집· 운반업 제외)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고물 상(신고대상 이상) 다) 해체 선별 및 원 료 재생업 [한국 표준산업분류 C3 83. 통계청]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 물 처리업(수집·운 반업 제외)
대상시설	거리제한	비고														
2)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 239. 통계청]	가)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 국가유산, 유적지, 정온 시설(공공시설, 학교, 병 원, 사찰) 등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200m이내															
3)다음 각호의 시설 가) 폐기물수집·운반 업 및 처리업 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은 제외한다. [폐 기물관리법 제25조]																
나) 고물상(신고대상 이상) [폐기물관 리법 제46조] 다) 해체 선별 및 원 료 재생업 [한국 표준산업분류 C3 83. 통계청] 라) 건설폐기물 처리 업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 률」 제21조]																
대상시설	거리제한	비고														
2)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C 239. 통계청]	가)취락지구 및 5호이상 집단취락, 관광지, 공원 , 국가유산, 유적지, 정온 시설(공공시설, 학교, 병 원, 사찰) 등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1,200m이내															
3)다음 각호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 기물 처리업(수집· 운반업 제외)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고물 상(신고대상 이상) 다) 해체 선별 및 원 료 재생업 [한국 표준산업분류 C3 83. 통계청]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 물 처리업(수집·운 반업 제외)																